

#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 <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규제 변화 >

현행		⇒	단통법 폐지 후	
“공시지원금” (이통사지원금)	사전 공시 → 공시대로 지원금 지급		“공통지원금” (이통사지원금)	자율적 공개
“추가지원금” (유통망지원금)	공시 15%↓ 상한	“추가지원금” (유통망지원금)	상한 폐지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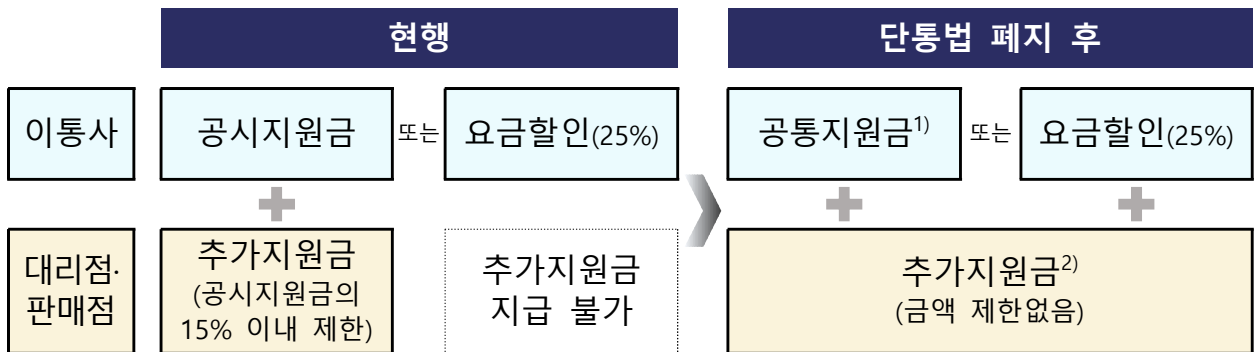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변화 >**



- 1) (공통지원금)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유통점에서 금액 동일
- 2) (추가지원금) 대리점·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으로 개별 유통점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셋째,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단통법 폐지 후 이용 계약서 변화 >**

현행		단통법 폐지 후	
<b>지원금</b>	공시지원금(이통사)+추가지원금(유통망) ※ 불법지원금 미기재	<b>지원금</b>	공통지원금(이통사)+추가지원금(유통망) ※ 유통망지원금 일체 기재로 투명성 ↑
<b>지급 조건</b>	(고지의무를 통한 규제) 단말기 할부 조건, 통신 요금제, 부가 서비스 이용조건 ※ 불법 개별 계약서 활용 가능성 ↑	<b>지급 조건</b>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 단말기 할부 조건, 통신 요금제, 부가 서비스 이용조건, 통신 결합 서비스나 기타 이용조건 ※ 지원금 지급조건 일체 기재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7월17일 행정지도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점검(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 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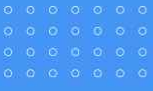
관련하여, 법 시행 후 시장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 휴대폰(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신대식 (044-202-6650)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우 (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10-1530)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양해웅 (02-2110-1533)





“ 25.7.22~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지원금 정보 의무 공시

현재 예시 A 스마트폰 / 89요금제 / B사 번호이동 2년 이용 시 공시지원금 50만원

폐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현재 예시 공시지원금: 50만원 → 공시한 대로 지급 추가지원금: 공시 15%인 7.5만 원까지 지급 가능

폐지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가입 유형 신규가입 / 번호이동 / 기기변경

폐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25% 요금할인 제도

유통망 추가지원금 지급 불가능

유지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행동 요령

지원금 정보 자율 공개

현행과 동일하게 공통지원금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이통사,유통망 지원금 경쟁

계약서에서 이통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할부원금(지원금 받은 후 최종 지불 스마트폰 가격)꼼꼼히 확인!

2년 초과 계약기간/페이백 조건 (나중에 지급) 조심!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차별 행위를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 https://www.cleanict.or.kr

공통지원금 or 25%요금할인 선택 가능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위약금, 약정기간 확인 필요



25.7.22~

#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단통법 폐지 전

사전승낙제

유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유지

이통사, 제조사  
불공정행위 금지

예시  
지원금 차별 및 특정 서비스 이용 지시  
또는 유도 행위 금지

유지·강화

이동통신사  
자료제출 의무

예시  
월별 지원금, 장려금 정보

유지·강화

## 단통법 폐지 후

사용자 행동 요령

###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게시 의무

정당한 권한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인지 사전승낙서 마크 확인!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마크 확인!

- 이통사, 제조사 불공정행위 금지
-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시책 마련
- 전문가·관련 단체 참여 협의체 운영

-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강화
- 이통사 제출자료 중 제조사별 장려금 구분 제출